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8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4.5.~4.11.) -

April 13, 2023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ble>
<tr><th>부처</th><th>내용</th><th>일시</th></tr>
<tr><td>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td><td>

•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전략」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으로 수립함

< 3대 주력기술 분야 100대 미래 핵심기술(안) >

<table>
<tr><td>**반도체 (45개)**</td><td>• **(소자)** DRAM/NAND 완성도 수준의 신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10개 기술
• **(설계)** 인공지능 · 6G · 전력 ·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 24개 기술
• **(공정)** 소재 · 장비 · 공정 자립화를 위한 前공정 · 後공정 11개 기술</td></tr>
<tr><td>**디스플레이 (28개)**</td><td>• **(초실감)** AR·VR · MR 등 초고해상도 구현 기술, 3D · 홀로그램 11개 기술
• **(다중감각)** 시각 외에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의 경험을 제공하는 4개 기술
• **(가변형·융복합)** 평면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입체공간을 구현하는 초평면 공간 영상 기술, 의류 · 생체 등에 탈부착하여 신체 정보 센싱 · 모니터링 13개 기술</td></tr>
<tr><td>**차세대전지 (27개)**</td><td>• **(이차전지)** DRAM/NAND 완성도 수준의 신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10개 기술
•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효율, 내구성 · 안전성 향상, 핵심소재 국산화 및 신소재 7개 기술
• **(동위원소전지)** 우주,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고출력 · 고효율, 안전성 확보 등 6개 기술</td></tr>
</table>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운영

② 정부는 민간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자할 예정

③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이들이 민간으로 적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④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반(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 활성화

</td><td>2023-
04-06</td></tr>
</table>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4.6.부터 공고하여, 약 30여 일간 ('23. 4. 17.~5. 17.)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동 사업은 4대 다배출 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9,352억 원(국비 6,947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환원제철, 화학공정 전기가열로, 혼합시멘트, 저온난화 공정가스 등 게임체인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0년까지 산업 부문 탄소감축 목표(△2.1억 톤)의 절반 이상인 1.1억 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4대 다배출업종의 대·중·소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비참여 기업에도 개발된 탄소중립 기술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참여 기업의 현금매칭율 비율을 완화(기존 대비 1/4수준)하고 연구자 참여(3책5공제도) 제한 등도 해제하여 기업의 참여 부담을 대폭 덜게 됨 *3책5공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책임자로 3개, 공동으로 5개로 제한 2023년은 우선 43개 과제에 국비 4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0년까지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실증 단계까지 투입하여, 개발된 탄소감축 기술들이 현장에서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철강 분야)** 코크스(주원료:유연탄)를 투입하는 고로·전로 등을 대체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하이퍼 전기로 등에 '23년 11개 과제(국비 103억원)를 시작으로 8년간 총 2,097억원(국비 1,205억원) 투자 ② **(석유화학 분야)** 탄화수소(나프타 등) 분해 공정의 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로 분해공정, 메탄의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에 '23년 6개 과제(국비 89억원)를 시작으로 8년간 총 1,858억원 투자 ③ **(시멘트 분야)** 석회석을 굽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석회석 함량을 최소화한 혼합재 시멘트 개발, 연료대체(유연탄→순환자원) 등 '23년 10개 과제(국비 74억원)를 시작으로 8년간 총 2,826억원(국비 1,975억원) 투자 ④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23년 16개 과제(국비 144억원)를 시작으로 8년간 총 2,571억원(국비 1,910억원)을 투자하여 그간 식각/증착/세정 등 핵심 제조공정에 활용하던 불화가스 등을 온난화 우려가 현저히 적은 새로운 공정가스로 대체하고 이에 맞춘 공정기술까지 개발할 예정	2023-04-06

부처	내용	일시
금융 감독원	•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경제 불확실성 등 잠재위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함	2023- 04-09
	주요 내용으로는 ① **(회계부정 적발·감시 강화)** 감리담당부서의 업종별 전문화, 중대사건 우선·집중처리 및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등을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② **(심사·감리 효율 제고)**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의 점검 및 위험요소 분석에 기초한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심사 · 감리의 효율성 제고 ③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감사인 감리 대상을 연초에 예고하여 회계법인의 수검부담 완화 및 감사품질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핵심사항을 위주로 테마점검 등을 확대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 ④ **(회계감독 고도화)**감리·제재 절차 합리화 및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혁신 등 회계감독기능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 ※ **(심사·감리 대상)** 상장사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 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부처	내용	일시
	< 2023년 심사 · 감리 운영계획 중점 추진 과제 > **목표**: 회계정보의 투명성 · 신뢰성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 **중점추진과제** **중대한 회계부정 적발 및 감시 기능 강화** • 회계리스크 증대 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업종별 전문화·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회계부정 적발 기능 제고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감리의 효율성 제고** •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로 점검 및 예방 활동 강화 •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을 통한 회계리스크 요인 적기 포착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효율화하여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 감사인감리 방식 효율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새로운 감독제도의 안착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 회계법인의 공시 충실화 등을 통한 감사품질 중시 문화 정착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고도화** • 업무 프로세스 지속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 지속 추진 • 내부 인프라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감리역량 향상 **위험 · 여건** 경기침체 등 회계분식 유인증대 회계개혁 이행에 따른 기업부담 중대 위법행위 적발·감시 강화 필요 감사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역할 필요 회계·감사 환경변화에 따른 감독체계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 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23.4.11. 시행. 다만, 일부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 예정) ※ 1.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부분 및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부분, 제91조의23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 제3호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제10조 및 제24조)**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 · 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 **②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제91조의15)** –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③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제91조의23 신설)** –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제126조의2)** –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2023- 04-1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조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함	
행정 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2023.10.12. 시행 예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 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회전출자 제도 및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제56조제7항)**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도입되어 있는 우선출자 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하여, 새마을금고도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으나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자를 모집하고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 (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③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 신설 (제20조제3항 신설)** –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함	2023- 04-1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④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제21조제1항)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 (제2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 ·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임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⑥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제22조의2 신설)** –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 · 물품 등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되,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⑦ 사업 범위 확대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 · 물품 등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되,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⑧ 새마을금고 지원 자금의 조성 · 운용 신설 (제67조제3항 신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 · 운용할 수 있도록 함 **⑨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 정비 (제74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7항)** – 주무부장관은 위법행위를 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에게 해임, 직무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준용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4.11. 시행)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탁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 · 매각 및 인수정리를 위해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에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포함하고, 자연보전권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면적을 '1천제곱미터'에서 '2천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제5항제12호, 제26조제8호, 제34조제1호다목, 제43조제5항제7호 신설 등)**	2023-04-11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4.7. 시행)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임대료 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세대 수 제한 완화 (제10조제1항제1호라목)** - 침실이 2개 이상인 소형 주택의 세대 수를 종전에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수의 비율을 더하여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 재량 부여 (제81조제2항 신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를 산정할 때에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2023-04-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③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단축 (별표 3) – 종래에는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주택이 건설 · 공급되는 지역이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에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3년까지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1년까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단축함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등 발생 시 조치 관련 자료 제출 규정의 상향 입법,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의 조치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3.1.3.)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중복 규정은 폐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업무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추가된 과태료 규정 관련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개정에 따라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시 조치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해당 조항 삭제 (안 제30조의8 제3항 폐지)** ②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 지정 및 조치 이행 확인 관련 전문기관 지정 등 (안 제30조의8제3항·제4항 신설)** ③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규정 관련 세부 부과기준 설정 (안 별표11 제2호 차목·카목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023/4/5(수)~5/16(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과)로 제출	2023- 04-05
행정 안전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등 **4종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 규정 정비 등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를 법 제12조제8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으로 개정 (안 제1조) – 과태료 감경대상자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 (안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 (안 제4조)	2023- 04-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통지서 수령 후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개시 지정기간 삭제 (안 제6조) – 법 제12조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의신청 규정 정비 (안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 (안 제1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와 상충되는 규정 삭제 (안 제11조) **②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안 별표)**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 과태료 산정 시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일괄 적용 **③ 기안문과 시행문 형식 등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서식)** –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등 4종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정비 (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서식) - 통일된 과태료 고지서 서식 사용 (안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 의견 제시기간 : 2023/4/7(금)~5/1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로 제출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절차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최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023. 2. 23. 발표) 후속조치로서 **동물병원을 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 (안 제19조제3항)** – 공사 진행 중 적정 시공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 등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하는 경우, 구간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② 공사감리 경력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 (안 제19조제6항)** – 굴착공사 등 같은 내용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의 경력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문구 수정 **③ 감리원 배치관리 절차 등 구체화(안 제19조제10항부터 제14항)** –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원 이중배치 방지 등을 위한 절차와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시행규칙 위임)	2023-04-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④ 동물병원 용도 재분류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안 별표 1) **⑤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근거 법령을 수정함으로써 「전력기술관리법」과의 내용 및 체계 통일성 유지 (안 별표 제91조의3)** ※ 의견 제시기간 : 2023/4/11(화)~5/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 제출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건축사보)가 다른 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는 것을 방지 및 감리원 배치현황 관리를 전산화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원 배치자료와의 교차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 (안 제19조제4항, 별지 제22호 서식)** **②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자와 함께 배치기간, 이중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사보의 경력 등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 (안 제19조의2제2항, 별지 제22호의2 서식)** ※ 의견 제시기간 : 2023/4/11(화)~5/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 제출	

<table>
<tr><th>소관부처</th><th>법률안</th><th>예고일자</th></tr>
<tr><td>법제처</td><td>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 · 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 · 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등 41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제재 처분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벌 대상에서 제외함

②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함

③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 후 불이행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합리화함

④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기수범과 차등화함

<table>
<tr><th></th><th>제명</th><th>개정 내용</th><th>소관
부처</th></tr>
<tr><td>1</td><td>관세법</td><td>-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76조제4항제1호)
-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반입·반출제한,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76조제4항제4호)
-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76조제4항제6호)
-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76조제4항제8호)</td><td>기재부</td></tr>
<tr><td>2</td><td>물가안정에 관한 법률</td><td>- 물가안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7조)</td><td>기재부</td></tr>
<tr><td>3</td><td>소프트웨어 진흥법</td><td>-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77조제2항)</td><td>과기부</td></tr>
<tr><td>4</td><td>전파법</td><td>-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 ·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86조제4호의2)</td><td>과기부</td></tr>
<tr><td>5</td><td>전자어음법</td><td>- 전자어음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2조제3항)</td><td>법무부</td></tr>
</table>

</td><td>2023-
04-05</td></tr>
</table>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6조제1항제1호 제3호)	행안부	
	7	온천법	-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4조제3호) -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5조)	행안부	
	8	자연재해대책법	-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77조제3항제1호 제2호)	행안부	
	9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사업시행자가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8조제1호, 제3호) -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함 (안 제38조제2호)	행안부	
	10	관광진흥법	- 카지노기구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공인기준 등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83조제1항제6호) -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83조제1항제11호)	문체부	
	11	저작권법	- 저작재산권자 등 표지의무를 위반한 배타적발행권자와 출판권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138조제3호)	문체부	
	12	방위사업법	- 방산업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휴 · 폐업한 경우에는 승인이 아닌 신고로 완화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6조, 제62조 및 제64조)	산업부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권한이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함 (안 제53조)	산업부	
	14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 양도, 합병, 상속 및 양도·합병의 무효판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43조 및 제46조)	산업부	
	15	전기안전관리법	- 정기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 법정검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0조 및 제52조)	산업부	
	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1조제8호)	환경부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1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현행 제8조 삭제)	환경부
	18	건설기계 관리법	- 정비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제재(제6조제1항제5호)가 신설('22.2월)됨에 따라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41조제4호) -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사용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41조제11호) - 건설기계조종사가 음주 또는 약물 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말리지 아니한 고용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의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1조제17호	국토부
	19	공동주택 관리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100조제1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100조제2호)	국토부
	20	공인중개사법	-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49조제1항제8호)	국토부
	2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이행의무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8조제1항제1호의2)	국토부
	22	물류정책 기본법	- 조정의 권고를 위해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위반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시 거짓으로 한자,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등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71조제7항제1호의2~제1호의3)	국토부
	23	항공안전법	-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163조)	국토부
	2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49조제7호)	해수부
	25	선박안전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85조제7호)	해수부
	26	선원법	-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177조제9호)	해수부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27	선주상호 보험조합법	-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함 (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해수부
2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사업자의 시설 안전점검, 활동구역 기상 확인, 활동구역 식별표시 등 의무 미이행 등에 적용되던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의 형벌 중 징역형을 폐지함 (안 제30조)	해수부
29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조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먼저 하도록 함 (안 제37조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의2)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9조제3항)	해수부
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6조제3호)	해수부
31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4조제2호)	식약처
32	식품위생법	-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을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하고,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함 (안 제97조제1호)	식약처
3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1조제2호)	식약처
34	의료기기법	- 자료제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4조제1호)	식약처
35	소방시설 공사업법	-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7조제3호) - 공무원의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8조제1호 제2호)	소방청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미보고, 거짓보고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0조제3항제12호) - 시설·기구 등 시정명령, 개수·개선명령 미준수에 대하여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30조제3항제13호)	경찰청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37	공인회계사법	-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함 (안 제53조제6항제2호)	금융위
38	상호저축은행법	-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9조제6항제2호)	금융위
39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함 (안 제99조제2항제6호 제7호)	금융위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경우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함 (안 제124조제1항제1호)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의 주식처분명령에 부수하는 의결권 행사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함 (안 제124조제1항제3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함 (안 제124조제1항제5호) -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의 기존 행정제재로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및 시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125조제6호)	공정위
4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 등의 청약 철회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60조제1항제3호) -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정보공개 관련 자료 제출 불응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62조제4호)	공정위

※ 의견 제시기간

: 2023/4/5(수)~5/15(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제처(법령정비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수입 위생용품을 반송, 폐기 외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제조회사·재질·색상이 동일하고 유형만 다른 일회용 숟가락·포크 등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유형이 다르더라도 재질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처리기한 규제완화 (안 제6조)** – 최초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전후로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보고하는 경우에는 생산 시작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변경보고도 최초 보고시와 동일하게 제품생산 전후로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② 영업자 지위승계 구비서류 간소화 (안 제9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③ 생산실적 보고기한 연장 (안 제11조)** –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의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1월 31일까지에서 2월 말일까지로 연장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④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의 용도전환 근거 마련 (안 제14조)** – 위생용품이 수입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 등 위반으로 부적합 발생 시 반송 또는 폐기만 가능했으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⑤ 위생용품제조업 창고 등의 시설기준 완화 (안 별표1)** –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영업소에 설치한 창고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창고 등의 시설 확충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⑥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동일사·동일 수입위생용품 요건 완화 (안 별표 3)** –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경우 제조국·국외제조회사·재질 및 색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사 동일 수입위생용품'으로서 최초 정밀검사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경우에는 유형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사 동일 수입위생용품으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023- 04-0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⑦ 일회용 컵·숟가락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기준 완화 (안 별표 5) – 위생용품제조업자 등은 자가품질검사를 제품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일회용 컵·숟가락 등은 재질이 동일한 경우 유형이 다르더라도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 의견 제시기간 : 2023/4/5(수)~6/5(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	
금융 위원회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행법」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영업의 양도·양수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등 관련 제도을 함께 정비**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한 채권 재조정 현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 (안 제24조제3항 신설)** **② 영업 일부폐쇄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이 전체(자산총액 또는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 (안 제24조의9제5항 신설)** **③ 영업 일부 양도 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총이익 또는 총부채가 전체(자산총액, 총이익,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정비 (안 제24조의9제6항제3호)** ※ 의견 제시기간 : 2023/4/10(수)~5/2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은행과)로 제출	2023- 04-10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음(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판결) 그런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배신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송금인과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된 금전의 보관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도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수취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됨 또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는 반면, 유사한 행위태양으로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 · 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60조의2 신설)**	2023-04-07
정무 위원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23-04-0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함)에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등)**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실적은 미진한 실정임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확인하고 선별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제69조제4항 등)**	2023-04-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 및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처리가 주로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송ㆍ수신하더라도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대량의 자료를 출력하여 위원회를 방문해야 하는 등 각종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미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절차에서도 소송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ㆍ관리ㆍ송달ㆍ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심판제를 도입하여 심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98조의2 신설)**	2023-04-0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지만, 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이용사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처해있음 이러한 원인에는 중개사업자와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영세 이용사업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중개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비용 부담을 빼놓을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중개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손해 떠넘기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 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안 제6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 (안 제7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안 제8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023-04-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안 제10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⑤ 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안 제13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중개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안 제1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각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⑦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 (안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와 관련하여 서면 교부 의무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⑧ 단체소송제도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중개거래계약 계약해지 · 갱신거절 또는 불공정행위 · 보복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과 소송허가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 **⑨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안 제38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⑩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안 제39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3)**	2023-04-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리점과 그 본사인 공급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이 피해를 보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4조의2 신설 등)**	2023-04-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가를 조작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나타남.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큰 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매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43조제1항 및 제2항)**	2023-04-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기만적인 표시 · 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포털 사이트가 특정 상품 등에 관한 표시 · 광고만이 우선하여 검색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례가 나타남. 이로 인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 등에 관한 정보가 고르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금지되는 포털 사이트가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색 알고리즘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3조의2, 제17조의2 각각 신설)**	2023-04-11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상황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플랫폼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 중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남. 부당행위 유형별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이 26.4%, '부당 요구'가 24.0%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의 폐단을 보여줌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거나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이 부재하고,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2023-04-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안 제5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안 제6조)** **③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거래하는 재화등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10조)** **④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하여 재화등의 노출 순위,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11조)** **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안 제15조)**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7조)**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8조)** **⑧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플랫폼 중계거래계약서를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안 제21조)** **⑨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재화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24조)** **⑩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28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⑪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29조) **⑫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음 (안 제38조)** **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안 제43조)** **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47조)**	
기획재정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문화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착품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영화·공연 등 대중문화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1항)**	2023-04-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2023-04-0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업무특성상 인력 집약적인 창작업무에 해당하여 사업 기반을 인구과밀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 두고 창업·운영할 수밖에 없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은 창업 시 세액감면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건실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당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제작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등)**	2023-04-0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던 대한민국 국민 등이 해당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 증설하는 등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이전일 또는 복귀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미 · 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3-04-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1991년부터 재정확보 및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내국인 등이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7%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ECD 국가 중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국가밖에 되지 않으며,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이라도 최저한세율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32조제3항 신설)**	2023-04-1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연간수령하는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3% 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 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하였음 그런데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하여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연금수령액을 상향하게 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23-04-0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200만원을 1,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3제1항)**	2023-04-05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2인)」**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서의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들의 보안조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사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더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호조치 명령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및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2023-04-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2인)」**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발생 등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조치 강화 및 침해사고 대응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침해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 등 대책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행 의무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원인분석 이후 마련된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4 및 제76조)**	2023-04-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2인)」** 2021년 쌀 생산량은 작황 호조 등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으로, 정부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쌀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27만톤을 두 차례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하였으나, 가격 하락이 지속되자 10만톤을 추가 격리하였음.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경기(7～9월) 가격은 20kg 기준 42,549원으로 수확기(10월～12월) 가격 53,535원 대비 20.5%나 하락하였음 현행법에는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막대한 재원 투입에 비하여 의도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매입가격이 생산원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여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생산자대표단체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최저가격 이상으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의 양곡 재배면적 조정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쌀 가격 안정 및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2023-04-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의 목적이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최저가격'을 정부가 양곡 매입 시 지불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양곡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운송비 등 소요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제8호 신설)** **②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거나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최저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제3항 단서 각각 신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 신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가격은 공공비축양곡에 대한 매입가격을 따르도록 함 (안 제16조제4항·제5항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재배면적을 조정한 생산자가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하여 그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면서,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사이버몰 화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함께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 아울러 교육 이수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등)**	2023-04-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석유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과 유사하면서 기존 내연기관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연료로 정의하고, 해당 연료의 제조·수출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와 면제 근거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수수·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도입·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EU는 2025년부터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써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연료를 수입·사용·개발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고,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자와 개발·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37조, 제37조의2 신설)**	2023-04-05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8인)」** 현행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 등록 등을 받기 위해 실시한 유효성 ·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허가 · 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없어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하여 미국 · 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도입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 · 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023-04-0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허가등에 따른 연장 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시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순서를 정함 (안 제89조제3항 신설)** **② 허가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9조제4항 신설 등)** **③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9조제5항 신설 등)** **④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도록 함 (안 제90조제7항 신설)**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 · 무효 · 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안 제90조제8항 신설)** **⑥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안 제13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한편,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의 미비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흡한 상황임	2023-04-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제1항 등)**	
국토교통 위원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시 · 도지사 등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재생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시 · 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 · 교량 · 용수시설 · 통신 · 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4 신설)**	2023-04-05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4/13(목) 14:00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4/11(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3-3호)」 발간	
	4/12(수)	「이달의 입법민원」(2023. 3월호) 발간	
국회도서관	4/1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0호 발간 -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	
	4/12(수)	「금주의 서평」 제622호 발간 - 붕괴의 사회정치학	
	4/13(목)	「현안, 외국에선?」 제57호 발간 -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	
예산정책처	4/12(수)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과 개선과제」 발간	
입법조사처	4/11(화) 10:00	국가적 아젠다 및 국회·정치·경제 혁신 관련 세미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4/12(수) 09:30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의원회관 2세미나실
미래연구원	4/11(화) 09:30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의원회관 2소회의실

[별첨1] 제405회국회(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전원위	4/10(월) 14:00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원위원회	
	4/11(화) 14:00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원위원회	
	4/12(수) 14:00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원위원회	
	4/13(목) 14:00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원위원회	
법사위	4/10(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기재위	4/11(화) 10: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4/12(수) 10: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교육위	4/14(금) 10:00	전체회의	-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농해수위	4/11(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 농림축산식품부 등 현안질의
국토위	4/11(화) 10:00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연금개혁 특위	4/12(수) 14:00	전체회의	- 공청회(기초연금 발전 방향)
기후위기 특위	4/11(화) 14:00	전체회의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소관 업무보고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10(월) 14:00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이용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1(화) 10:00	국가적 아젠다 및 국회·정치·경제 혁신 관련 세미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강은미·운후덕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2세미나실
4/11(화) 10:30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이용빈·최형두 의원실, 자전거타는 국회모임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1(화) 14:00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4/12(수) 09:00	EU 법무청장 초청 강연 -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유럽에서의 추진과정, 그리고 한국의 과제	김성주 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4/12(수) 09:30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한무경·김한정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4/12(수) 14: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김학용·김용판· 김경만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6(목) 14:00	협동조합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서영교·이동주· 진선미·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3(목) 19:00	하우스 어셈블리 시즌1.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	유의동 의원실, 협동조합 하우스	여의도 HOW's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8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4/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9호 발간 -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 입법례	
	4/5(수)	「World&Law」 제2023-7호 발간 - 아슬아슬 원자재 공급망, 지금 세계는?	
	4/5(수)	「금주의 서평」 제622호 발간 - 마스크 파노라마	
예산정책처	4/5(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	
	4/7(금)	「NABO Focus 제58호」 발간 -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재정전망	
입법조사처	4/3(월)	「이슈와 논점」 발간 -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4/5(수)	「이슈와 논점」 발간 - 정부입법계획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4/6(목)	「이슈와 논점」 발간 -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미래연구원	4/3(월)	「Futures Brief」 제23-05호 발간 -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3(월) 13:30	세포배양식품의 문제와 해법	전혜숙·최영희 의원실, (사)건강소비자연대	의원회관 3세미나실
4/3(월) 14:00	스마트돌봄 혁신 포럼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4(화) 10:00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김윤덕·박상혁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4(화) 14:00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선 토론회**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실
4/5(수) 14:00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 입법공청회**	이달곤·윤재갑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4/6(목) 10:00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김민철·김한규·김회재·도종환·최종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4/6(목) 13:30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	정우택·성일종· 하영제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4/7(금) 09:30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류성걸 의원실, 한국조세정책학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